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49호
2.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 등 25명
3.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5.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공개대상을 규정함(제2조)
- 공개방법을 규정함(제3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제4조)

○ 예산낭비 등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

○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을 규정함(제6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6.3.~ 6.7.(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이효원 의원 등 25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749호로 공동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누구나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금관리주체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 절감,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의무를 규정

1)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제안자의 신분 보호와 주민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²⁾).

- 그리고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에서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 낭비사례의 공개, 우수 절감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³⁾,

이러한 상위법령은 반복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고,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제20조(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시민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며, 우수 절감 사례의 공유 및 부적정 사례의 공개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의 체계적 공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조례안의 목적인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 참여에 기반한 책임행정의 실현 및 예산 낭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관련 지침⁴⁾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각 규정의 실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문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바, 조문 구성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2)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대한 검토(안 제2조, 안 제3조)

○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관련 제안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등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안 제1항)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은 주체에 따라 교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육청과 시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민의 경우 예산절감 제안과 예산낭비 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운영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절약, 수입증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내용을 주체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바,

이는 공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은 공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교육부 훈령인 ‘운영규정’에서는 예산낭비사례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⁶⁾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안 제2항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자칫 비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2항은 해석상, 예산 낭비 사례 등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4호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처럼 안 제2항은 공개 대상에 대한 예외 요건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규정’과 정보공개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3조는 특정정보를 제외(안 제2항)하고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있는바, 이는 ‘운영 규정’에 따른 공개에 관한 사항⁷⁾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예산낭비 관련 신고 및 제안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있으며, ‘운영 규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안 제2항), 그리고 자료 보완(안 제3항)과 통지 절차(안 제4항) 및 신분 비밀보장(안 제5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1]와 같이 법령과 ‘운영 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7) 제19조(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표-1] 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규정

조례안	관련 법령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신고센터장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운영 중인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신고센터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예산낭비 등 심사와 성과급 지급 및 포상에 대한 검토(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안 제1항)하며, 이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예산 집행 방식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가 발생할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급 또는 포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⁸⁾.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 제48조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

9)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장이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성과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¹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¹¹⁾에서는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한 심사기준 및 규모, 대상 등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닌, 성과금 지급을 위한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도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했을 때 안 제5조의 심사와 안 제6조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를 위한 심사 및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84, 2025.6.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이현주 (2180-8272)
----------	--------------------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11)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4.>
 -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